

# JCLU 사단법인 자유인권협회

인종차별철폐법 요강안  
(JCLU 외국인의권리소위원회 시안 Ver.1)

2003년 3월 15일

## 1. 목적

이 법률은 모든 자에 의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그 피해로부터의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이로 말미암아 헌법상 및 국제법상 인정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의

이 법률에서 '인종 등'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또는 국민적 출신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인종집단'이라 함은 특정한 인종 등을 공유하는 자로 구성되는 집단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률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직접 차별) 인종 등으로 인하여 한 자가 같은 상황하에서 다른 자가 받는 취급보다 불리하게 취급 받는 경우
- (2) (간접 차별) 외관상 중립적으로 보이는 규정 또는 기준을 적용할 때 특정한 인종집단에 속하는 자에게는 다른 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단, 당해 규정 또는 기준이 정당한 목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단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괴롭힘) 인종 등과 관련된 행위로서 위협, 모욕, 조롱 기타 불쾌한 상황을 초래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거나 특정한 자의 존엄을 해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는 행위는 (1)의 차별로 간주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인종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국적에 따라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 참으로 부득의한 경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
- (2) 직업의 성격상 특정의 인종 등과 관련된 특징이 그 직업상 결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러한 조건을 설정하는 목적이 정당하며 그 조건이 목적에

- 합당할 경우에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하여 다른 취급할 하는 경우
- (3) 인종 등과 관련하는 불리익을 방지하거나 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 3. 일반적 차별 금지

누구든지 인종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4. 개별 분야

#### [노동]

1. 사용자는 다음의 각 호 및 가타 노동계약과 관련하여 인종차별을 할 수 없다.
  - (1) 모집 및 채용
  - (2) 노동시간, 임금, 휴일 휴가, 노동 안전 위생 및 기타 노동조건
  - (3) 배치 및 승진
  - (4) 교육 훈련
  - (5) 복리 후생
  - (6) 정년, 퇴직 및 해고
2. 직업 소개 기관, 직업 훈련 기관 및 자격 부여 기관은 인종차별을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및 기타 직업단체는 당해 단체에 대한 가입 및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처우에서 인종차별을 할 수 없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채용, 승진을 포함하여 인종차별을 할 수 없다.

#### [의료, 사회보장]

1. 누구든지 인종차별을 받지 아니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든지 인종차별을 받지 아니하여 생명 유지 및 회복이 어려운 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긴급의료 혜택은 당해자의 체류 또는 취로가 합법적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인종차별을 받지 아니하여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인종차별을 받지 아니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일본 국내에 체류한 지 1년 이내인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누구든지 인종차별을 받지 아니하여 아동복지, 모자보건, 유유아(乳幼兒) 의료, 감염증 의료, 장애인 복지, 고령자 복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교육]

1. 누구든지 모든 형태의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인종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당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민족교육, 모국어교육 및 일본어교육을 받을 기회를 포함한 특정한 인종집단에 관한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모든 형태의 모든 단계의 교육은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인종차별의 철폐를 지향할 것이어야 한다.

#### [주거]

누구든지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한 주거 또는 사업용 부동산을 거래, 기타 처분하거나 임대차 기타 이용함에 있어 인종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물품 등의 제공]

누구든지 소매점, 교통기관, 숙박시설, 음식점, 극장, 공원 및 기타 공중이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물품 및 역무의 제공을 받음에 있어 인종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단체 가입]

누구든지 공중을 구성원의 대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퇴출할 경우 및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처우에서 인종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5. 공무원에 의한 차별 및 차별의 교사(敎唆) 금지

공무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입장에서 인종차별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은 다른 사람에게 인종차별을 할 것을 교사할 수 없다. 교사라 함은 지시, 명령, 유도 기타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헌법상 및 국제법상 인정된 인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의 인종차별의 철폐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서 이 법률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각종 조례를 제정하며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하여 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가진다.

#### 7. 법률의 홍보 및 주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하고 적극적인 홍보장치를 강구하여 이 법률을 널리 주지하여 이 법률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 법률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국제인권법

이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일본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인권에 관한 조약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반적인 해석 및 조약을 고려한다.